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56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56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57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575)

검 토 보 고

〈 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
3. 회부연월일 : 2023.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

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함)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병원의 정관변경, 이사장의 임명, 감사의 임명, 대학병원장의 임명, 업무의 지도·감독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음. 또한, 대학병원에 대한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u> 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u> ----- ----- ----- -----.
제4조(정관) ① (생략)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u>교육부장관</u>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건복지부장관</u> ----- -----.
제10조(임원) ① (생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1) 네 개정안은 조문순서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내용임

현행	개정안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감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한다. ④·⑤ (생략)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생략) ③ 원장은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u>교육부장관</u>이 임명한다. ④ ~ ⑦ (생략)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생략) ③ <u>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u> <u>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u>	②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u>보건복지부장관</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학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건복지부장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보조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에 따른 <u>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u>교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u>교육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감독) <u>교육부장관</u>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 보조 및 지원의 기준·관리</u>-----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 -----<u>보건복지부장관</u>-----.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 ----- ----- ----- ----- -----<u>보건복지부장관</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독) <u>보건복지부장관</u>---- ----- -----

현행	개정안
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
제25조(과태료) ① (생략)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② ----- -----보 <u>건복지부장관</u> -----.

1. 개요 및 현황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의 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이른바 “응급실 뽕뽕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 시작하였음.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

<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이관법 발의현황 >

연번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제안일
1	2011542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의원	2018.1.25.
2	2100693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동용 의원	2020.6.19.
3	2125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2023.12.13.
	21259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9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9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212633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	2024.1.23.
5	21264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 의원	2024.2.2.
	212648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8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220356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2024.9.3.
	220356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22036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2024.9.5.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법령의 개정 필요성

현행 법령에는 이미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²⁾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도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³⁾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⁴⁾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령하에서도 대학병원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연구⁵⁾는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담당부처의 지도·감독 기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함으로써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 7. <생략>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강화 및 기능재정립」, 2015

3. 병원의 자율성 훼손 및 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저하 가능성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경영에 있어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보임.

반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따라 대학병원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참여와 역할이 확대⁶⁾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비해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부의 개입 증가는 대학병원의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있는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운영 논란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및 부실운영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즉, 공공의료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역량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대학병원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성과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⁷⁾

4. 결론 및 관련기관 의견

이상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의료

6) 각종 보건의료 정책 관련 위원회, 정책 추진 기구 위원 참여, 국책 연구 수행 등

7) 참고자료1 “2024년 국내 종합병원 순위” 참고

인력으로 양성하고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능이 병존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것인지, 공공의료에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관련기관 의견

교육부는 동 법안은 복지부-교육부 협업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대통령 주재 회의, '23.10.19.)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관 부처의 이관에 동의하고 있음. 또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 원, '25)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과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과 관련 연구
- 3의2. 의학과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신규 투자(110억 원, 25)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 발표한 투자·지원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동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는 기관인만큼 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우수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의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 수련 등 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전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공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에서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25.정부안 9,396억원)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등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의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국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국립대학병원 육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임.⁹⁾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이관시 병원의 자율성 훼손, 연구역량 저하 등이 우려되며, 또한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관 부처 이관에 따라 병원이 공공의료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시, 우수한 교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⁰⁾

문 의 처
02)6788-5188

9) 참고자료2 “국립대병원 육성·이관 주요 사항 보고” 참고

10) 참고자료3 “소관부처 이관 관련 서울대병원 설문조사” 참고

※참고자료1 : 2024년 국내 종합병원 순위¹⁾

순위	병원	지역	비고	순위	병원	지역	비고
1	서울아산병원	서울	세계 22위 (전년 29위)	68	강원대병원	춘천시	
2	삼성서울병원	서울	세계 34위 (전년 40위)	69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3	세브란스병원	서울	세계 40위 (전년 67위)	70	서울부민병원	서울	순위 상승 71 -> 70
4	서울대병원	서울	세계 43위 (전년 49위)	71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74 -> 71
5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	세계 81위 (전년 93위)	7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순위 상승 73 -> 72
6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세계 94위	73	원광대병원	익산시	
7	서울성모병원	서울	세계 104위	74	동국대일산병원	고양시	
8	아주대병원	수원시	세계 120위	75	삼성창원병원	창원시	순위 상승 79 -> 75
9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3 -> 9	76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순위 상승 80 -> 76
10	강북삼성병원	서울		77	예수병원	전주	
11	고려대안암병원	서울	순위 상승 12-> 11	78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12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79	은평성모병원	서울	순위 상승 86 -> 79
13	경희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15-> 13	80	대전성모병원	대전	
14	중앙대병원	서울		8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시	
15	건국대병원	서울	순위 상승 16 -> 15	82	지샘병원	군포시	순위 상승 84 -> 82
16	이화의료원	서울		83	강남차병원	서울	순위 상승 94 -> 83
17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광역시		84	성애병원	서울	순위 상승 88 -> 84
18	화순전남대병원	화순군	순위 상승 41 -> 18	85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순위 상승 87 -> 85
19	충남대병원	대전		86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순위 상승 92 -> 86
20	영남대병원	대구광역시		8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21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순위 상승 22 -> 21	88	인천한림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93 -> 88
22	전남대병원	광주광역시		89	삼육병원	서울	
23	고려대안산병원	안산시		90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순위 상승 96 -> 90
24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91	검단탐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95 -> 91
25	강동경희대병원	서울		92	부산성모병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0 -> 92

26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		93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순위 상승 103 -> 93
27	동탄성심병원	화성시		94	대전선병원	대전	
28	순천향서울병원	서울	순위 상승 31 -> 28	95	청주의료원	청주	순위 상승 98 -> 95
29	부산대병원	부산시		96	유성선병원	대전	순위 상승 107 -> 96
30	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97	한일병원	서울	순위 상승 106 -> 97
31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98	안동병원	안동시	순위 상승 99 -> 98
32	보라매병원	서울	순위 상승 33 -> 32	99	청주성모병원	청주	
33	고려대구로병원	서울	순위 상승 34 -> 33	100	해운대부민병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9 -> 100
34	동아대병원	부산시		101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시	순위 상승 110 -> 101
35	전북대병원	전주	순위 상승 37 -> 35	102	대림성모병원	서울	
36	한양대구리병원	구리시	순위 상승 39 -> 36	103	부산의료원	부산시	순위 상승 104 -> 103
37	해운대백병원	부산시		104	순천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위 상승 108 -> 104
38	가천대길병원	인천광역시		105	줄은강안병원	부산시	
39	순천향천안병원	천안시		106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순위 상승 112 -> 106
40	양산부산대병원	양산시		107	청주한국병원	청주	순위 상승 114 -> 107
41	분당차병원	성남시	순위 상승 44 -> 41	108	목포시의료원	목포	
42	강남성심병원	서울	순위 상승 43 -> 42	109	동의의료원	부산시	
43	건보공단일산병원	고양시		110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17 -> 110
44	울산대병원	울산광역시		111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	순위 상승 119 -> 111
45	단국대병원	천안시		112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15 -> 112
46	일산백병원	고양시		113	순천향대구미병원	구미시	순위 상승 120 -> 113
47	한양대병원	서울	순위 상승 51 -> 47	114	구미차병원	구미시	순위 상승 121 -> 114
48	부산백병원	부산시		115	천주성삼병원	대구	

49	가톨릭관동국제 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53 -> 49	116	좋은삼선병원	부산시	
50	원주세브란스기 독병원	원주	순위 상승 54 -> 50	117	나사렛국제병원	인천광역시	순위 상승 123 -> 117
51	노원을지대병원	서울		118	안양샘병원	안양	순위 상승 126 -> 118
52	충북대병원	청주		119	명지성모병원	서울	순위 상승 125 -> 119
53	제주대병원	제주시	순위 상승 55 -> 53	120	에스포항병원	포항	순위 상승 128 -> 120
54	경상대병원	진주시		121	부산부민병원	부산시	
55	창원경상대병원	창원시		122	계명대대구동산 병원	대구	첫 진입
56	상계백병원	서울	순위 상승 58 -> 56	123	좋은선린병원	포항	순위 상승 132 -> 123
57	부천성모병원	부천시		124	대전보훈병원	대전	첫 진입
58	강동성심병원	서울	순위 상승 61 -> 58	125	대구카톨릭대칠 국가톨릭병원	대구	첫 진입
59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순위 상승 62 -> 59	126	혜인의료재단한 국병원	제주	첫 진입
60	이대목동병원	서울	첫 진입	127	세림병원	인천	첫 진입
61	조선대병원	광주광역시		128	홍익병원	서울	첫 진입
62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129	하나종합병원	청주	순위 상승 131 -> 129
63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순위 상승 65 -> 63	130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64	한림대한강성심 병원	서울		131	명지병원	고양시	첫 진입
65	순천향부천병원	부천시	순위 상승 70 -> 65	132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66	서울의료원	서울	순위 상승 69 -> 66	133	광주한국병원	광주	첫 진입
67	한림대춘천성심 병원	춘천시		134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참고자료2 : 국립대병원 육성·이관 주요 사항 보고¹²⁾

□ 추진 배경

- (지역·필수의료 위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심화 ⇨ 의료 이용 편중이 인력·자원의 불균형도 초래하는 악순환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1.) : 서울 89.2% vs 충남 66.4%, 경북 63.4%

* 빅5 병원 이용자 중 서울 외 지역환자 비율('20., 심평원)
외래 ('10.) 14.2% → ('20.) 23.7% / 입원 ('10.) 30.9% → ('20.) 36.4%

-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필요) 국립대병원은 의학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지역 의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 (임상) 중증·필수 최종 치료 + (임상 외) 인력 양성·지역병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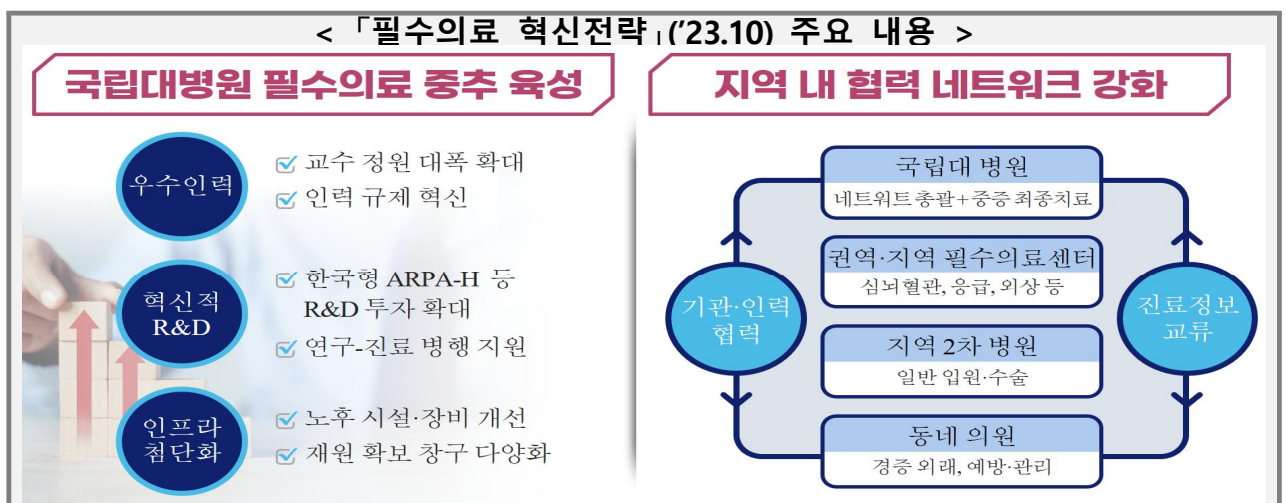
- 투자 미흡*, 규제, 정책 지원체계 취약(전담조직 無) 등으로 인해 인력·인프라 확충 한계 ⇨ 경쟁력 약화 지속

* 국립대병원 지원(교육부) : ('06.) 563억원 → ('23.) 663억원

-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수도권 빅5 수준까지 견인할 정책 및 투자가 시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리체계 개편도 필요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지역·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 발표 ('23.10)

□ 국립대병원 육성 추진현황



12)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❶ (인력확충)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거점 국립대 의대(9개) 전임교원 1,000명 증원(~'27.)

* 필수도권 의대 임상 전임교수('24.4) : 국립대(9개) 평균 107명 vs 사립대(23개) 평균 249명

❷ (규제 개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의사의 민간과의 보수 격차 완화를 위해 총인건비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10.24)

- 총인건비·정원 등 의료기관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속 추진(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 등)

❸ (연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계속},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 지원^{신규} 등 국립대병원 관련 R&D 투자 확대

❹ (인프라 첨단화)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술실 등 관련 인프라 재정투자 착수('25.~)

*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 '25.정부안 815억원, 지방비 포함 시 1,624억원
(자부담 : 75%(교육부) → 20%(복지부))

□ 이관 입법안

○ (발의 현황) 김민전 의원(9.3), 장종태 의원(9.5) 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4개 법 개정안

○ (주요 내용) 現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1)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2)운영비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 김민전 의원안에는 설립목적 조항에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 문구 추가

○ 입법 시급 추진 필요성

① (민간-수도권과 격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전보) 등을 통해 ▲중별 적합 기능 강화 ▲협력 활성화 중심의 의료체계 확립 추진 중이나

- 국립대병원은 지원체계 변경이 없다면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격차 확대 필연적 (* 전문의 중심 구조로 전환을 위해 인력 등 투자 중)

② (교육부 지원 한계) 국립대병원은 대학과는 별도 법인이며 정부 지원은 小*, 母재단·대학의 지원 받을 수 있는 민간병원 대비 열악

* 국립대학병원 의료수익 대비 국고지원 비율('22.) : 0.94%

- 전공의 부재 속에서 국립대병원의 어려움 가중되는 상황이나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대상으로 가용한 정책 수단은 제한적

*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 대비 진료량 회복율 약 10%p 낮음(2월 1주차-10월 5주차 비교)

③ (국립대병원 현안 산적) 지역 內 신뢰도·위상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노후병원 신축*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추진 중

* ▶ 전남대병원 예타 조사 진행 중 ▶ 부산대병원 본관 신축 예타 신청 등

** 제주·강원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희망 중, 특히 도내 상급종합병원 없는 제주는 도 주요 관심현안

- 의료 이해도·전문성 갖춘 복지부가 병원의 현안 해결 지원해야 하나 이관 없이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포괄적 투자·지원 불가능

□ 이관 관련 부정적 견해에 대한 검토

① (국립대병원 설립 취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고유 미션으로,

-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설립 취지와 일치

- 특히, 현행 法상 국립대병원의 사업, 책무 등이 복지부 관장 사항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단독 소관*인만큼

* ▲전공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

- 국립대병원의 미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관이 필요함

※ (고려 필요사례) 보육은 아동·돌봄정책(복지부), 유아교육정책(교육부) 업무 이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 업무 총괄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주요 조항과 보건복지부 미션·업무 상관성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을 ---의학 등에 관한 <u>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로서 <u>국민건강 증진이 고유 미션이자 업무임</u>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과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과 관련 연구 3의2. 의학과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융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① 「전공의법」 제1조 :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조 : 이 법은 ---<u>보건의료인력의 --- 우수인력 양성</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u>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조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u>보건신기술의 인증</u>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u>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 <u>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u>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진료 상관성) 의학 교육·연구와 진료는 매우 밀접

- 해외 유수의 병원들이 탁월한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의학 교육·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 고려 시, 진료 강화가 교육·연구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 2024년 뉴스위크 평가 글로벌 병원 랭킹 1위를 차지한 Mayo Clinic은 중증·고난도 환자 중심으로 年 130만명 진료 ⇨ 진료 결과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기능도 활성화되어 年 1.4조원 규모의 R&D 편당 확보

- 美 대학병원들은 보건부 산하 NIH(국립보건연구원), CMS(건강보험센터) 등과 밀접한 협력관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부처로의 이관으로 의학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낮음
- 또한, 복지부의 월등한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관된다면 병원의 연구기능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

	보건복지부		교육부
R&D 예산 (’25.정부안)	9,927억원	vs	5,958억원
지원 분야	보건의료 분야 집중지원		전체 이공계 분산
특성	병원 연구 진흥(연구중심병원 등), 중개, 임상 및 융복합 연구(데이터·AI 등)		이공계 인력양성에 집중

참고1

국립대병원 이관 전후 비교표

◆ 소관 이관에도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간의 관계는 기존과 동일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립대병원 경쟁력 제고와 국립대의 동반성장 견인

	현행	이관 후	관계부처 협의사항
설치 근거법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치과대병원, 서울대치과대병원 등 4개 설치법 체계	현행 유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병원 이사회	국립대 총장 당연직 이사장		
병원장 임명권자	서울대병원 : 대통령, 他 국립대병원 : 장관		
대학 재산	대학이 병원 부지 소유·관리		
직원 연금	사학연금 적용 특례		
인력 처우	20년 가까이 전임교원 정원 동결 (예. 경북대병원 '02년 113명 → '23년 119명)	의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정원 확대 + 병원 소속 임상교수 지원 강화	전임교원 증원(1,000명+α) 행안부·기재부 협의 완료
총인건비 규제	총인건비·정원 규제 적용 → 우수인력 확보 애로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정원 자율성 강화 * KA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례 참고	협의 완료 ('25년 공운위 논의 예정) * 부처 관리체계 마련 중
진료·경영	행위별 수가 적용, 필수분야 만성 적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 중심 성과 기반 수가체제로 전환
인프라	시설·장비 확충 국고 지원을 25% 국립대병원(10개) 지원 : 1,114억원 vs 국립암센터 지원 ^{복지부} : 843억원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최우선순위로 설정	빅5 수준의 인프라 첨단화 확충 지원
R&D 투자	국가 R&D 中 국립대병원 지원 규모 1% 미만 * '21년 기준 국가 R&D 27.4조 원 중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1,189억원	국립대병원 특화 R&D 기획·투자	연구·교육⇄임상 선순환 구조 확립 * ARPA-H 9년간 약 1.2조원 투자 등
부처내 전담조직	X	설치 예정	-

① 의학 교육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지원

< (참고) 의사 양성체계 >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의 (4~5년)	
교양과목	1~2학년	3~4학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의학 강의 (대학)	임상실습 (대학<병원)	실기 수련	전문과목 전속 수련

- 임상실습은 의사 양성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병원의 역할이 중요

* 예)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 2학기를 ‘학생인턴’ 과정으로 운용

- 의료 관련 전문성 갖춘 복지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인프라와 커리큘럼 운영 관련 투자 추진하여 임상실습 여건 개선

- 또한,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 고유 업무

-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은 수련 관련 보다 체계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증·고난도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강화

② 연구 투자 강화 ⇨ 바이오헬스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 의학 교육은 연구 역량과 매우 밀접*하기에 병원의 임상·중개 연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요

* 연구 투자 확대 → 우수인력 유입&연구성과 창출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학 교육 퀄리티 상승

- 복지부는 R&D 법령·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보건의료 R&D 예산을 투자 중인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전폭적 투자 가능

* '24년 R&D 예산 7,884억원 ⇨ '25년 9,396억원 투자 예정 (전년 대비 +19.1%)

- 의과학자 등 진료-연구 병행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 계획

- 또한, 병원의 연구 결과물이 신약, 치료법 개발 등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자원 풍부한 복지부의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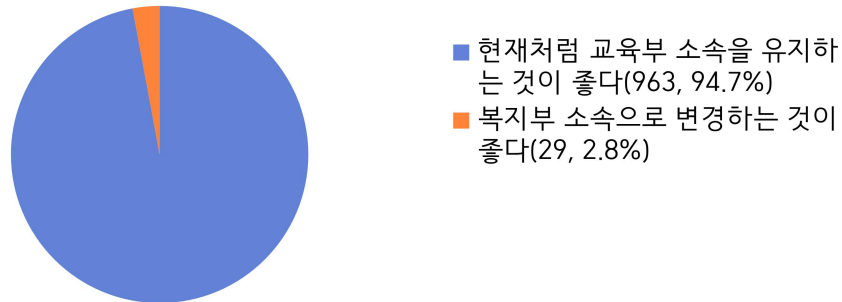
※참고자료3 : 소관부처 이관 관련 서울대병원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소속 전임교수(겸직교수), 기금교수, 병원법인임상교수, 진료교수 총 1,531인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차례 시행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의 찬반 의견과 우려하는 점, 이관될 시의 교수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1차 설문조사 결과

2024년 3월 14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7일간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안내 메일과 문자가 발송된 1,528인 중 1,017인이 응답하였고(응답률 67%), 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54인(5%), 현재처럼 교육부 소속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963인(95%)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서울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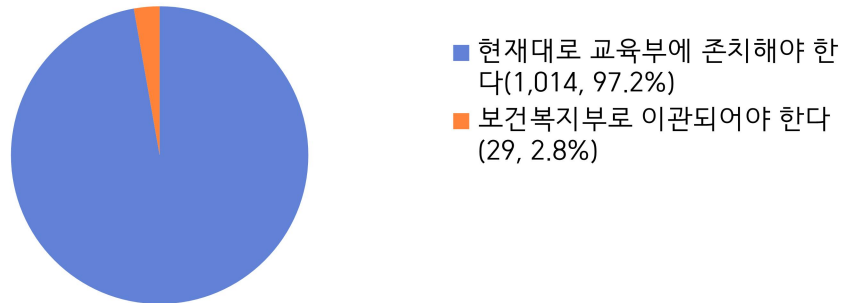


2) 2차 설문조사 결과

2차 설문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갖는지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2차 설문은 2024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이 발송된 1,531인 중 1,042인이 응답하였다(응답률 68%).

응답자의 97%인 1,014인이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29인)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2차) 서울대학교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3) 설문 결과 정리

1,2차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소속교수의 97%가 현재대로 교육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건복지부 이관 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저하, 우수인재 이탈로 인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성과 위상이 크게 소실될 것을 우려하였다(응답자의 90% 의견). 지역/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보건복지부 이관 시 향후 국내 타 병원이나 외국으로 이직하여 연구·교육을 위주로 하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응답자의 0.7%)보다, 지역의료기관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역의료기관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응답자의 88%)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